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. 1. 21 선고 2019가단205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. 11. 23. 접수 제304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판결)

판사정희철

별지